

공 시 송 달 공 고

1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, 제6조에 의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(지연)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(감액고지)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감, 수취인 미거주, 장기간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. 귀하의 차량이 붙임과 같이 미(지연)가입 되었다는 통보가 있어 의무보험 가입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시고 가입증명서를 고령군청 지역경제실(FAX 054-950-6289)로 2026년 7월 23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, 자동차 의무보험 납세의무자께서는 지역경제실 책임보험 담당자에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, 의견서 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◎ 제 목 : 자동차 의무보험 미(지연)가입자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
(감액고지)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◎ 대 상 자 : 20마23** 등 68건

◎ 공시송달내용 : 26년 6월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, 고지서, 부과예고서 반송분

◎ 공시송달현황 : 별첨

◎ 공 고 기 간 : 2026. 7. 3. - 2026. 7. 23.

◎ 문 의 처 :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교통행정담당 (☎054-950-6594)

2026년 7월 3일

고 령 군

